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3. 2. 16(목) 10:00

제24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
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00호
- 나. 제 출 자 : 운영회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2. 6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2. 6.

2. 제안이유

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의 고독사 예방 및 소외·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범위,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라.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마. 예방 및 지원사업, 교육·홍보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.
- 바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.
- 사. 기존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」는 폐지함(안 부칙 제2조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2023. 2. 7. ~ 2. 13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상위법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- 1)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 -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의 책무를 규정함
- 3) 범위,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
 - 적용범위 : 금천구 거주 1인가구
 -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독 규정함
- 4)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- 5) 예방 및 지원사업, 교육·홍보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
- 6)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- 7) 기존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」는 폐지함(안 부칙 제2조)

다. 검토의견

-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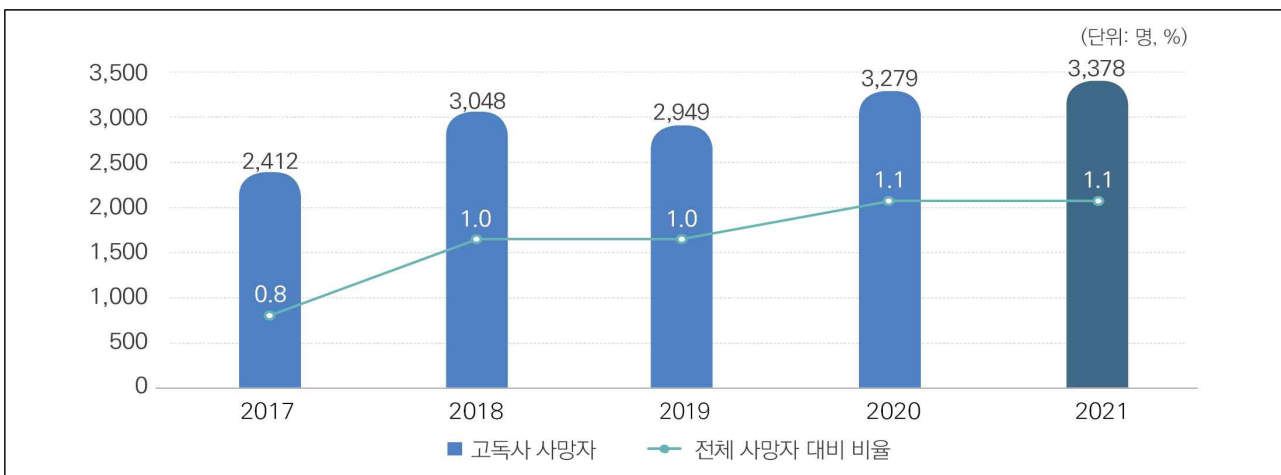
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3,378명이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났는데 5년 전인 2017년 보다 약 1000명이 증가함. 특히 고독사 가운데 절반 이상을 50~60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.

고독사가 늘고 있는 것은 1인 가구 증가와 매우 연관되어 있으며, 지난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3.4%였다. 이 가운데 50대와 60대는 1인 가구 전체의 31.8%에 해당됨.

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< 보건복지부 >

-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,378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
- 매년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으며,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~60대(매년 50% 이상)로 확인
- ※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 : 남성 고독사 10.0%, 여성 고독사 5.6%
-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, 아파트, 원룸 순이며, 최초 발견자는 형제·자매, 임대인, 이웃주민 순으로 확인

< 최근 5년 간 고독사 발생 현황 >



출처 : 보건복지부

○ 2022년도 금천구 고독사 발생 현황

1) 고독사 현황(3일 이후 발견) : 4명

(단위 : 명 / '22년말 기준)

계	인적 구분							사망 경위								
	성별		연령별					사망원인			발견경로			발견시간		
	남	여	40세이하	41~50세	51~60세	61~64세	65세이상	병사	자살	기타	직접주인	가족	이웃등	3일내	7일내	7일이상
11	7	4	1	-	4	1	5	8	3	-	1	1	9	7	1	3

2) 동별 고독사 발생현황

계	가산동	독산1동	독산2동	독산3동	독산4동	시흥1동	시흥2동	시흥3동	시흥4동	시흥5동
4건	1건	1건	1건	-	-	1건	-	-	-	-

○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심리 상담 및 치료, 의료혜택, 안부확인,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지원하여 고독사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1. 4. 1.] [법률 제17172호, 2020. 3. 31., 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